

의안번호	2201869
의 퇴 인	맹성규의원
회 답 일	2024. 8. 21.
추계번호	24D205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 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안 제38조 (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) 안 제39조 (상임위원회의 위원)	-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위원정수 50명)를 상임위원회인 '예산결산위원회'로 하고 위원정수를 30명으로 하며, 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-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심사, 세입세출결산·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,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과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	의무규정
2	안 제83조의3 (재정총량심사) 신설	-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재정규모, 분야별 재원배분계획, 중앙 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 보고하고, 국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송부함 - 정부로 송부된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안 제38조(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) 안 제39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3조의3(재정총량심사) 신설	

2. 상세 사유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재정총량 심사 추가(안 제37조, 제38조 및 안 제83조의3)
 -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인 ‘예산결산위원회’로 하고 위원정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반면 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며,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증가 및 재정총량심사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개최 증가 건수, 재정총량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인력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 - － 개정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2201868)」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, 예산결산위원회의 재정총량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.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